

# 미디어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

홍 대 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CT법경제연구소장)

2023. 9. 13.

# 목 차

1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 제정 취지 및 목표

2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 구성 및 특징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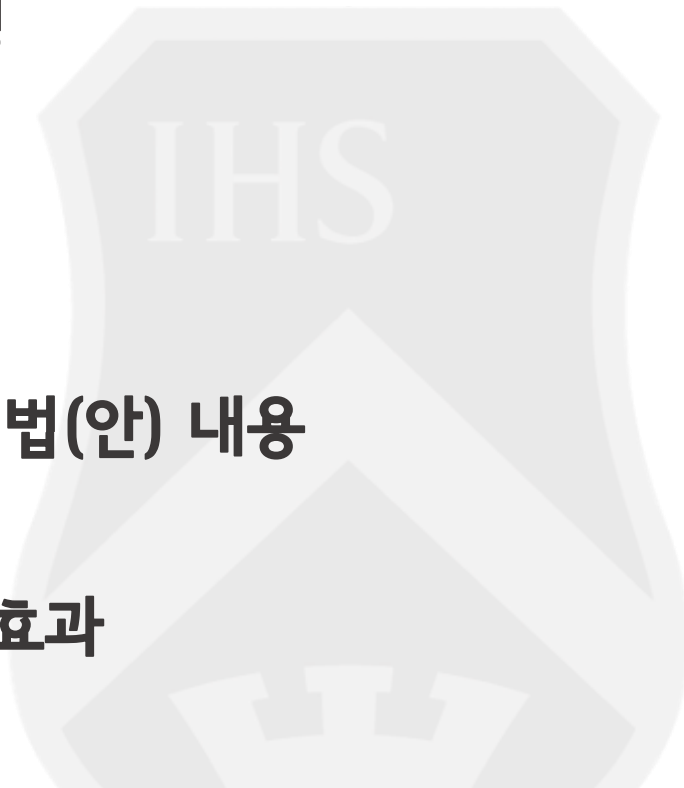
미디어서비스 분류 체계 및 정의

4

미디어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법(안) 내용

5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 제정의 기대효과



- **국내 사업자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체계 마련의 필요성 대두**
  -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미디어 플랫폼의 발전에 따른 미디어 시장 재편에 조응하는 민간서비스 영역 (유료방송 및 OTT)의 별도 법안 마련 필요
  - 기존 방송 법제는 지상파 중심의 공적 책임을 민간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민간서비스 영역의 자율성 및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
  - 정부 각 부처에서 다년간 통합법제를 추진해 왔으나 법안은 공개되지 않은 채 답보 상태
  -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가 국내 시장을 꾸준히 잠식해 나가는 데 대한 위기감 고조로 규제 형평성 제고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체계 마련 시급
- **공공 미디어 영역과 분리하여 민간 미디어 영역의 정책 의제(agenda) 해결 중심의 법안 제안**

## 2.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 구성 및 특징

(현) 방송법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장 방송사업자 등	제2장 미디어서비스와 미디어서비스 사업 일반 제1절 미디어서비스 사업의 운영 제2절 미디어서비스의 제공
제3장 소속위원회 등	제3장 미디어 제공 서비스 사업자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4장 이용자 이익 및 시청자 권익 보호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제5장 경쟁의 촉진과 미디어 생태계 조성 제1절 경쟁의 촉진 제2절 자율규제와 정부의 역할 제3절 분쟁의 해결
제6장 시청자의 권익 보호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 제1절 조정 제2절 그 밖의 조치	제6장 미디어서비스 발전의 지원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제7장 보칙
제8장 보칙	제8장 벌칙
제9장 벌칙	

- 시장에서 경쟁관계가 형성되지만 기존의 방송법제에 포섭되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서비스를 법제에 편입하고 이를 통해 수평적 규제체계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며 동등 계층에 대해서는 법제에 새로 편입되는 미디어서비스를 기준으로 하는 실질적인 최소규제(light-touch regulation)가 이루어지도록 함
  - 방송법에는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없어 서비스를 단위로 하여 형성되는 거래와 경쟁에 대한 규율에 적합하지 않고, 수직적인 방송사업 분류로 인하여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전제로 하는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에 어려움이 있음
  - IPTV법에도 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방송법제의 수직적 규율 대상 중 IPTV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과 서비스에 대응함
  -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하여 규율 대상인 미디어서비스 간에 존재하는 수직적인 방송사업 분류를 폐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서비스를 법제에 편입함으로써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와 동등 계층에 대한 최소 규제를 전제로 하는 수평적 규제체계의 전환할 수 있는 규율의 모델을 제시함

### ■ 현행 방송법의 목적과 규제 유형별 목적을 사업법 성격에 맞게 재정비

- 경제적 서비스로서 미디어서비스의 특성과 이와 관련성 있는 기술 발전과 공정한 경쟁의 조건, 시청자 또는 이용자 권익 보호, 문화적 서비스의 관점에서 규범 가치를 설정하여 목적 조항에 반영

#### [예시]

“ 이 법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미디어서비스 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미디어 생태계에서의 콘텐츠 제공·거래 등 상호작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청자 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미디어의 다원성 보호 및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미디어서비스의 기본원칙

- 미디어서비스 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
- 미디어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보장
-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의견 다양성(diversity), 문화적·언어적 다양성 보호
- 미디어 다원성(plurality) 보호
-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의 이익 보호
- 차별 금지



### ■ 법 적용 대상의 확대와 규제 형평성 제고

- (적용 대상) 방송법과 IPTV법 적용 대상인 SO, 위성방송, IPTV와 OTT(온라인 실시간 채널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미디어 제공서비스로 포괄, 미디어 콘텐츠서비스도 적용
- (규제 형평성) 동등한 계층의 미디어 제공서비스에 대해 동등한 최소규제 적용, 예외적으로 미디어 제공서비스의 특성과 방식을 고려한 차등 규제 적용
  - 공통 규제 영역 : 진입규제(면허 또는 신고), 시장점유율 규제, 기업결합 규제, 광고 규제, 이용자 및 시청자 보호 규제, 미디어 서비스 평가, 자율규제, 분쟁 조정
  - 설비 기반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와 온라인 실시간 서비스 특정 규제 : 기술결합 서비스, 기술중립 서비스 신고 규제, 국내 프로그램 편성 규제, 금지행위 규제
  - 설비 기반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 특정 규제 : 기술기준 규제, 이용약관 규제, 재송신 규제



## 미디어서비스 분류체계

플랫폼

미디어 제공서비스

설비 기반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

(현) SO, 위성방송, IPTV

온라인  
실시간 채널 서비스

(현) 지상파방송 및  
유료방송의 온라인  
실시간 채널 서비스  
OTT 실시간 채널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현) 주문형 VOD OTT

동영상  
공유 서비스

(현) 이용자 공유 동영상  
플랫폼 (예: 유튜브 등)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서비스

미디어  
프로그램

미디어  
채널

이용자  
생성  
비디오

- **상위개념으로서 ‘미디어서비스’ 개념 도입, 이에 따른 미디어서비스 규제 체계 재편**
  - 공공영역에 속하는 방송은 제외하고 기존의 유료방송(단, 보도 기능은 제외)과 다양한 형태의 OTT를 포괄하는 민영(private), 상업(commercial), 유료(paid) 영역 방송서비스를 ‘미디어서비스’로 규정
- **‘사업’을 규정하기 이전에 미디어서비스 특성과 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고려한 ‘서비스’ 개념 신설 ⇨ 사업의 범주 명확화**
  - 방송을 정의하여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을 강조하는 현행법과 차별화하여 미디어를 정의하지 않고 열린 개념으로 두는 대신 사업의 대상인 미디어서비스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
- **플랫폼 영역을 ‘미디어 제공서비스’로, 콘텐츠 영역을 ‘미디어 콘텐츠서비스’로 구분**

### 3. 미디어서비스 분류체계 및 정의

현 방송법	미디어서비스법(안)
서비스 개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미디어 제공서비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비 기반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li> <li>- 온라인 실시간 채널 서비스</li> <li>-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li> <li>- 동영상 공유 서비스</li> </ul> </li> <li>▪ <b>미디어 콘텐츠서비스</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방송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파방송사업</li> <li>- 종합유선방송사업</li> <li>- 위성방송사업</li> <li>- 방송채널사용사업</li> <li>- 그 외 : 중계유선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전광판방송사업, 전송망사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미디어서비스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디어 제공서비스 사업</li> <li>- 미디어 콘텐츠서비스 사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방송사업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파방송사업자</li> <li>- 종합유선방송사업자</li> <li>- 위성방송사업자</li> <li>- 방송채널사용사업자</li> <li>-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li> <li>- 그 외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미디어서비스사업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디어 제공서비스 사업자</li> <li>- 미디어 콘텐츠서비스 사업자</li> </ul> </li> </ul>

#### ■ 미디어서비스 개념 구성요소로서 '편성', '채널' 개념 재정의 & '구성방식 결정' 개념 도입

- (방송법) 프로그램이 아닌 방송 제공 단위로 프로그램 순서표(schedule)에 의한 번호 기반 채널만을 상정
-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 프로그램 제공 단위로 프로그램 순서표 또는 미디어 제공 목록(catalog)에 의하면서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온라인(비선형) 채널을 제공하는 구성방식(OTT 채널, FAST 채널, 유튜브 채널 등) 또는 채널에 의하지 않고 미디어 제공 목록만을 제공하는 그 밖의 구성방식(VOD 등)을 모두 포괄

- ☞ '편성' : 현행법에서 상정한 프로그램 순서표에 따른 편성만이 아니라 미디어 제공 목록에 포함되는 주문형 프로그램의 선별도 편성의 개념에 포괄하여 범위를 확장
- ☞ '미디어 채널' : 기존의 채널은 방송이 제공되는 단위를 지칭했으나, 프로그램 순서표에 의한 번호 기반 채널과 미디어 제공 목록에 의한 온라인 채널을 포괄하여 방송이 아닌 프로그램 제공 단위로서 미디어 채널의 범위를 확장
- ☞ '구성방식 결정' : 프로그램의 선택이나 구성에 대한 통제 여부를 넘어 프로그램 제공 방식이 다양해지는 사업 현실에 대응하여 미디어 채널, 미디어 제공 목록의 형태를 포함하면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단위를 정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설정

#### ■ 미디어 제공서비스

- 미디어서비스 중 공급받는 프로그램의 구성 방식을 결정하여 시청자에게 송신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

가. **설비 기반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 : 미디어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설비를 관리·운영하며 그 설비에 기반하여 복수의 채널로 실시간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서비스, 사업구역이 지역적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전국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와 지역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로 구분

나. **온라인 실시간 채널 서비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채널 방식으로 실시간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서비스

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주문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라. **동영상 공유 서비스** : 자동화된 수단에 의하여 미디어 채널 또는 미디어 제공 목록에 의하지 않는 구성 방식으로 미디어 프로그램 또는 이용자 생성 비디오를 제공하는 서비스

#### ■ 미디어 콘텐츠서비스

- 미디어서비스 중 시청자에 대한 송신 또는 제공의 목적으로 미디어 프로그램 등 동영상 콘텐츠를 프로그램 순서표에 따라 편성하여 공급하거나 미디어 제공 목록에 편성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서비스

- **공정한 경쟁 기반 확대 및 국내외 자본 유입을 통한 투자 활성화**

### ● **미디어 소유 제한 폐지와 겸영 제한의 지배 제한으로의 전환**

- **소유 제한 규정 폐지**

- 현행법상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 제한 규정 모두 폐지(미디어 콘텐츠서비스 사업자 중 보도 기능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문, 통신사의 소유 제한은 필요한 경우 보도 기능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공공 미디어 법에 두도록 함)

- **겸영 제한 대폭 완화 : '지배 제한'으로 전환**

- 현행법상 겸영은 단순 겸영 및 100분의 5 이상 주식 소유 금지를 의미하여 공정거래법 상 기업결합 기준의 실질적 지배 기준보다 엄격하고 단순한 투자도 금지하는 불합리한 규제 조항임
- 겸영 개념을 공정거래법 상 '지배' 개념으로 대체하여, 기존의 지배에 영향이 없는 소수지분 취득도 금지하는 투자 제한 규정을 계열회사 편입 기준인 '사실상의 사업내용 지배' 제한 규정으로 전환

### ■ 최소 필요조건만 적용한 진입 규제 완화를 통한 규제 비용 절감 및 동일 계층 사업자의 동등 진입 조건 보장

#### ■ 미디어제공서비스사업자 간 진입규제의 차이 조율 및 면허 갱신 심사 기준 축소

##### - 설비 기반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 사업자 : 허가제에서 면허제로 전환

- 사업 면허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설비와 기술'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함
- 면허 갱신제를 도입하여 면허를 갱신할 때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이 때 적용되는 심사기준을 재편
- (면허 갱신 심사기준) 미디어서비스 평가 등 정량적 기준 중심으로 심사기준 단순화, 정성적 평가 기준 삭제, 설비 및 기술 기준 적합성 기준만 유지

※ 정부가 사업구역을 정하지는 않지만, 사업구역이 지역적으로 한정된 지역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 사업 면허도 가능하게 하고 현재 사업구역별 허가를 받은 유료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미디어제공서비스 사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두어 현재의 법적 지위를 유지함

##### - 설비 기반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 사업자 외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및 동영상 공유 서비스 사업자 신고제 도입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제외)

#### ■ 미디어 콘텐츠서비스 사업자 대상 신고 또는 등록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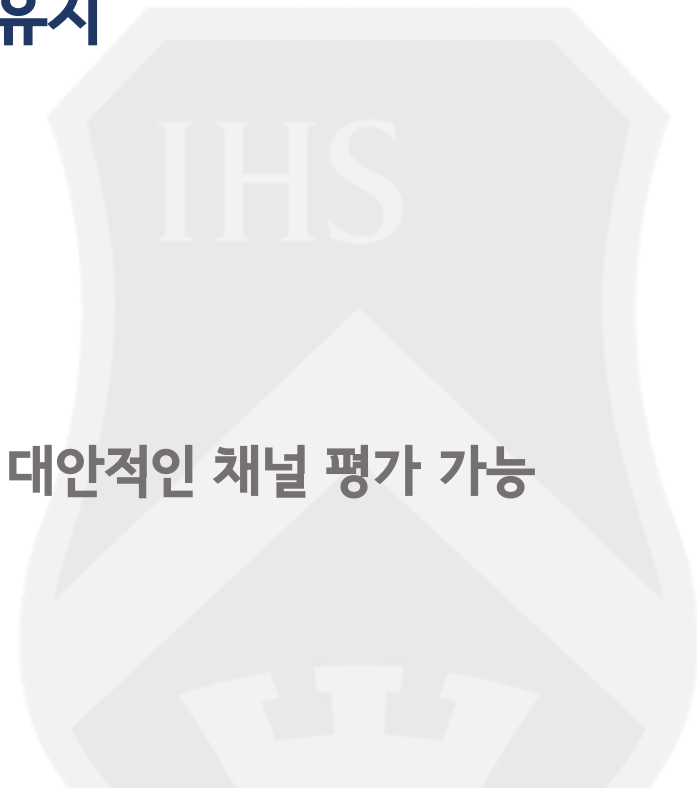
##### - 대부분 신고제로 전환하되, 보도 기능이 포함된 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의 경우)와 상품 소개 및 판매 전문 사업자는 등록으로 전환

##### - 보도 기능이 포함된 사업자(종합편성의 경우)의 보도 기능 관련 별도 진입 요건이 필요한 경우 공공 미디어 법에서 규정하도록 함

### ▪ 공익적 책무 완화를 통한 편성의 자율성 확대

#### 주요 내용

- **의견 다양성 및 문화 다양성 보장을 위한 '다양성' 편성 원칙 유지**
  - 장애인 콘텐츠 서비스 제공, 국내 제작 미디어프로그램 편성 등은 유지
- **전문편성 PP의 장르 규제 폐지**
  - '주된 방송분야'에 대한 미디어 프로그램 편성 조항 삭제
  - PP 등록 시 선택한 '주된 방송분야'는 미디어서비스 평가 등과 연계하여 대안적인 채널 평가 가능





- (사회·문화적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내용 규제 재편(완화)을 통한 표현의 자유, 사업자 자율권 확대
  - 최소한의 규제 원칙 적용을 통한 규제 기준의 일관성 제고
-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혐오 및 차별 금지 등 최소한의 원칙만 유지
  -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내용 규제 조항 유지 및 공영방송 및 보도 관련 규제 조항 삭제
- 규제 일관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송프로그램과 온라인비디오물 간 프로그램 등급 분류 기준 통일

현 방송법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
-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u>인권존중</u> 에 관한 사항	-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 (삭제)
- <u>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u> 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u>양성평등</u> 에 관한 사항	- (통합)

## 4. 미디어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법(안) 내용 : 내용 규제

현 방송법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
-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 (삭제)
-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장애인 등 미디어서비스 소외계층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 인종, 민족, 성별,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 (삭제)
-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 (삭제)
-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 (삭제)
-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삭제)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 법령에 따라 미디어서비스 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 광고 시장의 경쟁력 회복을 통한 선순환 수익 구조의 창출

## 주요 내용

- 미디어광고 유형 단순화 및 규제 완화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세분화된 광고 유형으로 인한 포지티브 규제를 광고 유형 재분류와 통합을 통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및 정비 근거 마련
- 신유형 광고 규제 근거 마련
  -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신유형 광고를 '기타 미디어프로그램 광고 유형'으로 포섭

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							
미디어프로그램 외 광고					미디어프로그램 내 광고		기타 미디어프로그램 광고 (신유형)

- 채널구성의 자율성 확대 및 지역채널 활성화 지원을 통한 플랫폼 경쟁력 제고

### 주요 내용

- 채널 개념의 확장을 통한 실시간 및 온라인 미디어 제공서비스의 공통 규제 틀 마련
  - 채널 구성 및 운용 원칙의 수립 : 문화적·언어적 다양성 및 미디어 다양성 구현
  - 공공·공익 채널 의무편성 규제 폐지
- 지역성 강화를 위한 지역채널 구성·운용의 자율성 확대 및 공적 책무 지원
  - 설비 기반 지역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 사업자에 한하여 지역채널을 구성·운용하도록 함
  - 지역채널의 편성 내용에 대한 제한을 없앴으로써 지역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 자율화
  - 지역채널 공적 책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채널(특히 지상파방송 채널) 제공에 대한 거래 성실 협상의 의무 이행 근거 마련

### ■ 이용약관 규제 완화를 통한 이용자 선택권 및 서비스 경쟁력 확대

#### ■ 이용약관 신고 및 승인 대상 축소를 통한 규제 완화

- 매출액 및 가입자수 등을 근거로 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용약관 신고 대상인 설비 기반 다채널 서비스 사업자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의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신고 부담 경감

#### ■ 경쟁상황평가 평가 결과에 근거한 승인 사업자 대상 고시

- 결합판매 요금 승인 대상으로서 (설비 기반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 중) '시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서비스사업자' 등을 지정
- 지정 기준은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설비 기반 서비스와 온라인 서비스를 포함)를 단위 시장으로 하여 그 시장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 결과에 따르도록 함
- 설비 기반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 사업자의 최소상품 승인 유지

- 미디어 콘텐츠 제공 관련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시청권 확대
  - 동영상 공유 서비스 사업자 대상 불법 콘텐츠 유통 제한 규정 신설
    - 사업자의 불법 프로그램 또는 비디오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자율규제 활동 의무 부과
  -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개선과 지상파방송 채널 제공 규율 방식 검토
    - 의무재송신 제도 유지를 전제로 그 대상으로 지정된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경우 복수 채널에 대한 예외 인정 지정 고시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 단위로 지정되도록 함
    - 설비 기반 지역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 사업자가 자신의 면허 사업구역 밖에서 제공되는 지상파방송 채널을 동시 재송신하려고 할 경우의 제도적 제약(승인제)에 대한 재검토(자율적 채널 계약 허용 등)
    - 시장에서의 역학관계 변화에 대응한 의무재송신 제도의 대안 모색(의무제공 등) 및 재송신 제도의 규율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상파방송 채널 제공 규율 방식 검토(성실협상 의무 등)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처리를 위한 자율적 분쟁조정 근거 도입

- 사후규제 수단인 금지행위 규제 중심의 규제체계 개선과 관련 제도와의 연계성 강화

### 주요 내용

- **금지행위 규제와 대체 관계에 있는 사전규제 완화 및 개선**
  - 이용약관 심사에서 금지행위 위반 요소 판단 단계를 없애고 사후규제의 영역으로 이관함
  - 재허가 제도를 면허갱신 제도로 개선하여 재허가 시 사업자들에게 공통으로 재허가 조건으로 부가하던 사항을 사후규제의 영역으로 이관
- **관련 제도와의 연계성 강화**
  - 경쟁상황평가제도와 방송 관련 정책 또는 구체적인 규제 관련 결정과의 연계성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미디어서비스법상 금지행위 규제 대상 행위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함
  - 금지행위 조사를 할 때 분쟁조정제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된 경우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쟁조정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함

## 4. 미디어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법(안) 내용 : 자율 규제 등

- **건전한 미디어서비스 거래 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상생 협력 등 미디어서비스 산업 경쟁 촉진을 위한 자율규제 기반 마련**

### 주요 내용

- **자율규제 대상 및 정부 역할 재정립**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자체심의, 미디어 채널의 구성과 운용, 미디어 채널 제공 협상(재송신포함), 금지행위 예방 등 관련 자율지침 마련
  - (정부) 자율규제 준수활동에 따른 혜택 제공 및 지원
- **분쟁조정 대상의 확대 및 혜택 제공을 통한 제도 활성화**
  - 금지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가능
  - 분쟁조정 시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분쟁조정 제도 이용 확대



- 미디어서비스 발전 지원 및 기금의 안정성 확보 위한 독립적 기금 설치 근거 마련

### 주요 내용

- 미디어서비스사업자 지원을 위한 기금 조항 신설
- 기금 부과 대상 및 기금 징수율 경감 기준 확대
  - 미디어 서비스 사업자를 원칙적인 기금 분담 대상으로 규정함
  - 기금 경감 대상의 확대 등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기금 징수율 차등 책정 및 경감 기준으로 '미디어서비스 평가' 결과 활용 근거 마련



## 유료방송과 OTT 등을 포괄하는 민간 미디어서비스 사업자 대상의 시장 중심 사업법안

### 시청자 또는 이용자 권익 보호

-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혐오 및 차별 금지 등 내용규제 최소한의 규제 원칙
- 미디어서비스 평가
- 채널 제공 거래의 합리화를 통한 시청권 향상
- 자율적 분쟁조정 도입

### 미디어 다원성 보호

- 지역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 사업자의 지역성 강화 채널 편성의 자율권 보장 및 공적 책무 지원
- 금지행위 규제와 분쟁조정 제도의 연계와 자율규제 활동의 조화
- 미디어서비스 발전의 지원

### 경쟁 촉진

- 미디어 제공서비스별 규제 간극 최소화 및 폐지
  - 소유·겸영 제한 완화
  - 실시간 및 온라인 미디어제공 서비스 공통규제 틀 마련
  - 이용약관 신고 및 승인대상 축소
- 미디어 제공서비스의 허가제를 면허제로 개선
- 금지행위 규제와 경쟁상황평가, 분쟁조정 제도의 연계

### ■ 민간 미디어 생태계의 현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 ■ 민간 미디어 생태계의 현안 문제

- 수직적 규제체제로 인한 사업 전환과 혁신 유인 부족
- 유료방송사업자를 포함한 미디어 제공서비스 사업자와 지상파방송 및 PP를 포함한 미디어 콘텐츠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 기제 결여로 인한 갈등의 지속
-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차별화 부족으로 인한 미디어 제공서비스 시장 내에서의 실질적 경쟁압력 저하
- 이용자의 미디어 제공서비스 선택권 저하로 인한 이용자 후생 저해

-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은 방송법과 IPTV법을 개편하여 민간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비경제적 목적의 규제를 슬림화하고 경쟁과 이용자 보호 등 경제적 목적 위주의 합리적인 규제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함



감사합니다

2023. 9. 13